

오른소스 개요

황은경 violet.blue

TED 동영상

[대규모 온라인 협업] Massive-scale online collaboration

- 리캡차의 비밀
- <u>듀오링고</u>: 사용자들이 무료로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클라우드 소싱의 방식으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플랫폼

1 Open Source?

46

"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Isaac Newton

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mark>공</mark>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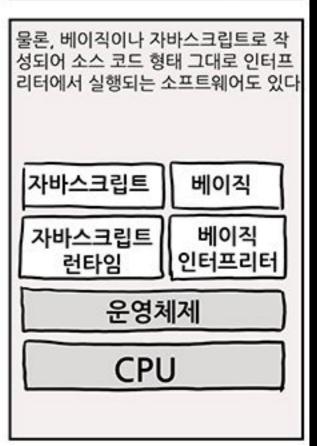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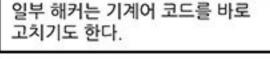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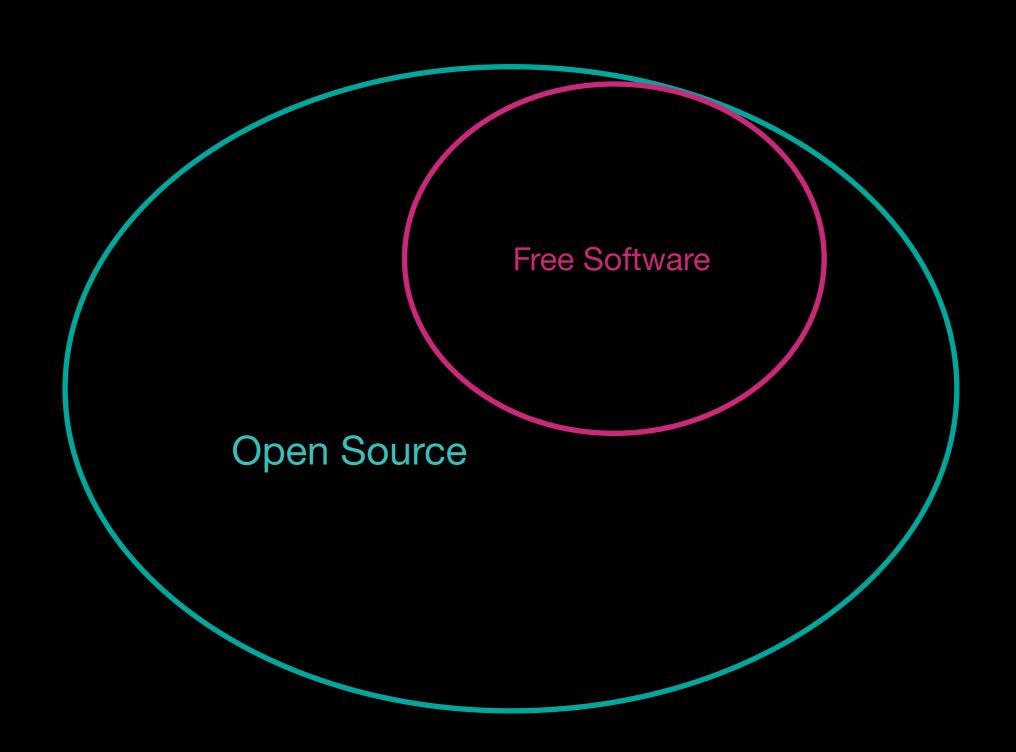
오픈소스와 Free 소프트웨어

Free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재배포 할 수 있는 자유
- 개작된 프로그램의 이익을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도록 이를 배포 할 수 있는 자유

오픈 소스의 의미는 '소스 코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으로 Free 소프트웨어의 기준에는 못미친다. - G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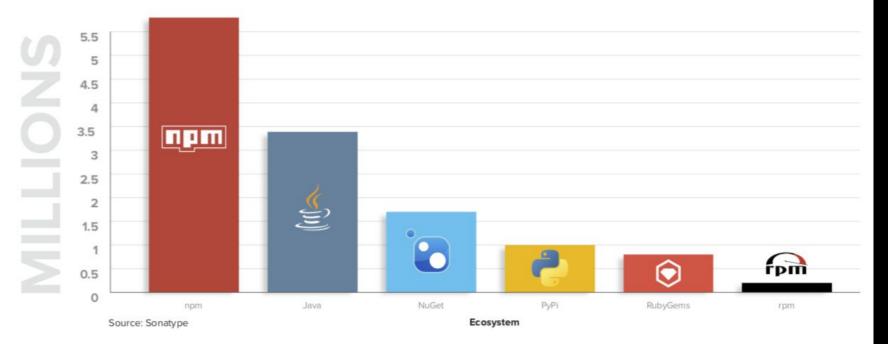
Open Source 와 Free Software



Open Source 저장소







2

SW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OSS 의 양면

자유

사용, 수정, 배포의 자유

Copyleft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

무료

내부 사용과 외부 판매

반환 의무

저작권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

>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권리 보장

SW에 관한 지적 재산권과 라이선스의 의미

- SW는 SW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해당
 SW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갖는다.
- 라이선스(License)는 이러한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해 SW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대여 규칙을 정의해 놓은 사용 허가권(License)으로 대여의 방법은 유료 및 무료로 구분된다..
- 공개SW 라이선스는 1998년 공개SW의 활성화 및 인증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에서 제시한 10가지 의무사항 (Open Source Definition, OSD)을 충족해야 한다.

오픈소스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할 <mark>의무가</mark>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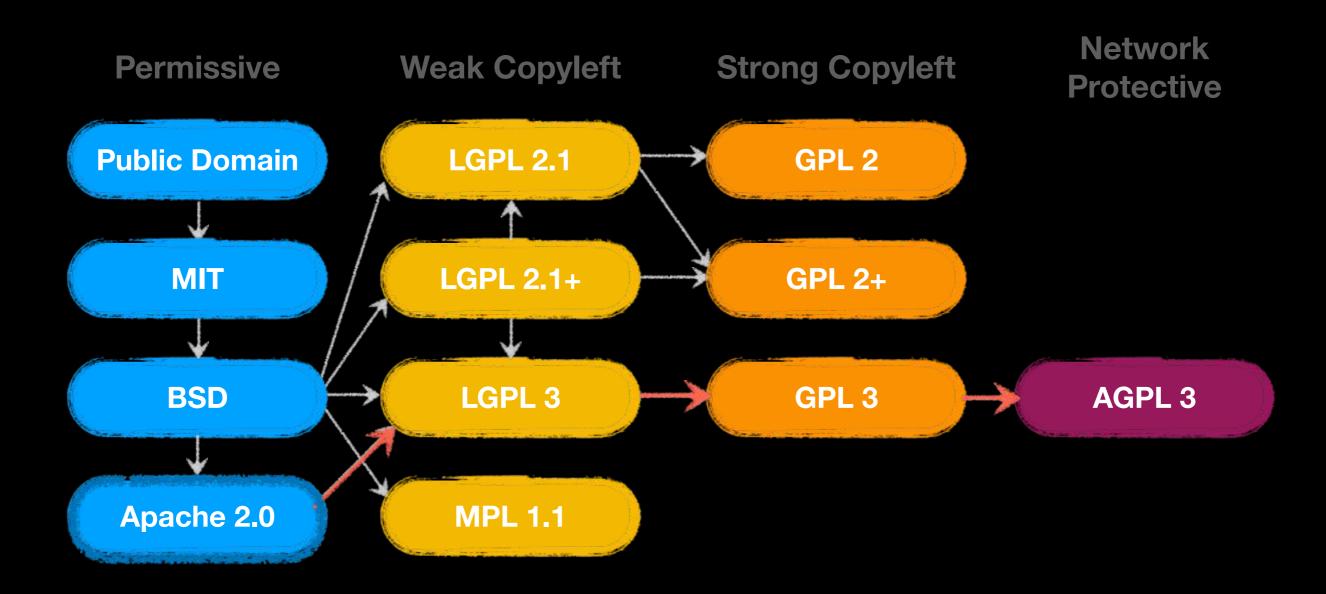
License, copyright 유지

"코드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는 것은 개발자의 의무사항"

```
// http://stackoverflow.com/a/17893381
public static String truncateUTF8(String s, int charLimit) throws UnsupportedEncodingException {
   byte[] utf8 = s.getBytes("UTF-8");
   if (utf8.length <= charLimit) {
       return s;
   int n16 = 0;
   boolean extraLong = false;
   int i = 0:
   while (i < charLimit) {
       // Unicode characters above U+FFFF need 2 words in utf16
       extraLong = ((utf8[i] \& 0xF0) == 0xF0);
       if ((utf8[i] & 0x80) == 0) {
          i += 1;
       } else {
           int b = utf8[i];
           while ((b & 0x80) > 0) {
              ++1:
              b = b << 1;
          7
       if (i <= charLimit) {
           n16 += (extraLong) ? 2 : 1;
   return s.substring(0, n16);
```

```
* Copyright (c) 1995, 2008,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Neither the name of Oracle 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OWNER OR *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CIDENTAL, SPECIAL, *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PROCLIP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 The HelloWorldApp class implements an application that simply prints "Hello World!" to standard output. */
class HelloWorldApp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Hello World!"); // Display the string.
```

Open Source License 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

BSD

-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
- 저작권 명시(고지문)
- 적용 사례 : Nginx(The BSD 2-Clause License)

MIT

- MIT에서 해당 대학의 SW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고지문)
- 적용 사례: 부트스트랩, Angular.js, Backbone.js, jQuery

Apache

- 아파치 재단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 BSD 의무사항 + 특허권(GPL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는 결합 불가능)
- 적용 사례 : 안드로이드(v2.0), 하둡(v2.0)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LGPL

-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 (Static Linking 으로 사용하면 전체 코드 공개)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적용 사례: 모질라 파이어폭스(v2.1)

GPL

- GPL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체 GPL로 공개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적용 사례: 리눅스 커널(v2.0)

AGPL

- AGPL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체 AGPL로 공개. 웹 서 비 스 포함!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적용 사례 : <mark>몽고DB(v3.0)</mark>
 - Database Server and Tools : AGPL
 - Drivers : apache license

라이선스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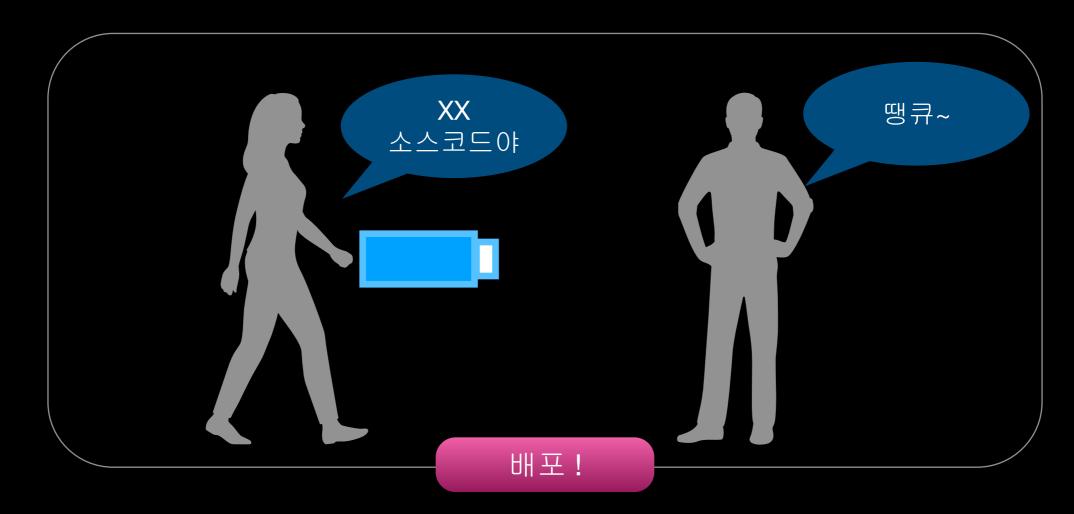


AGPL: 웹서비스도 적용 된다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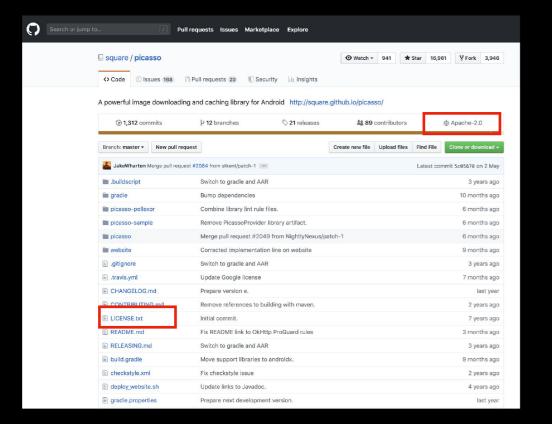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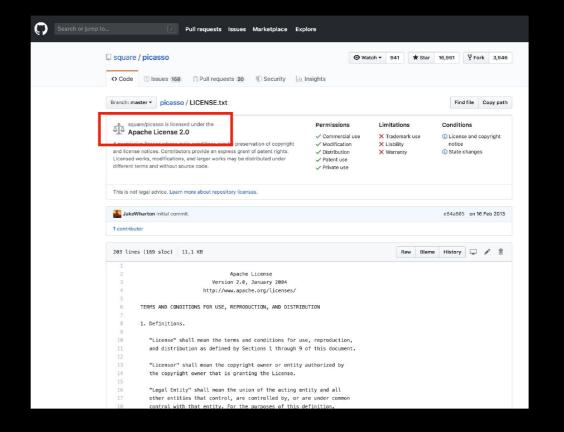
"소스코드 및/또는 바이너리 (실행) 코드의 카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to give someone else a copy of its code — either its source code, or its binary (executable) code, or both)"

[출처] Open Source Initiative (https://opensource.org)



Open Source License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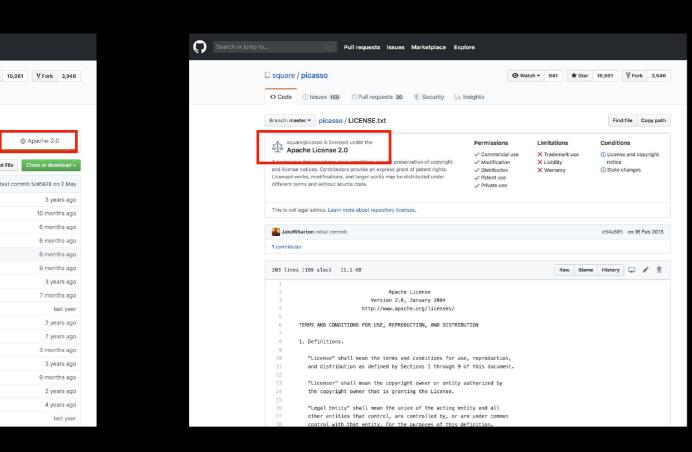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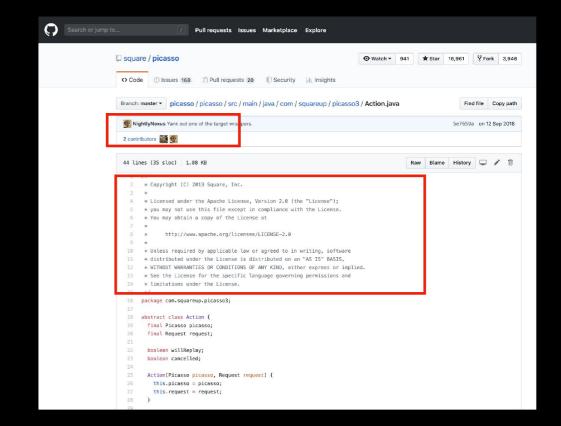




https://github.com/square/picasso

Open Source License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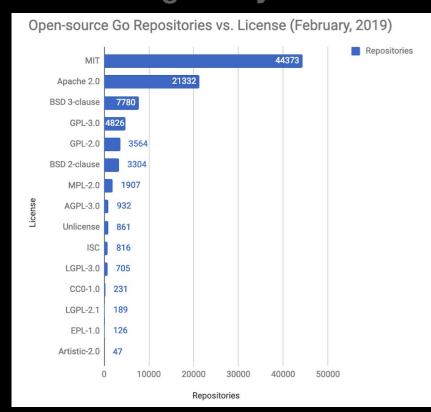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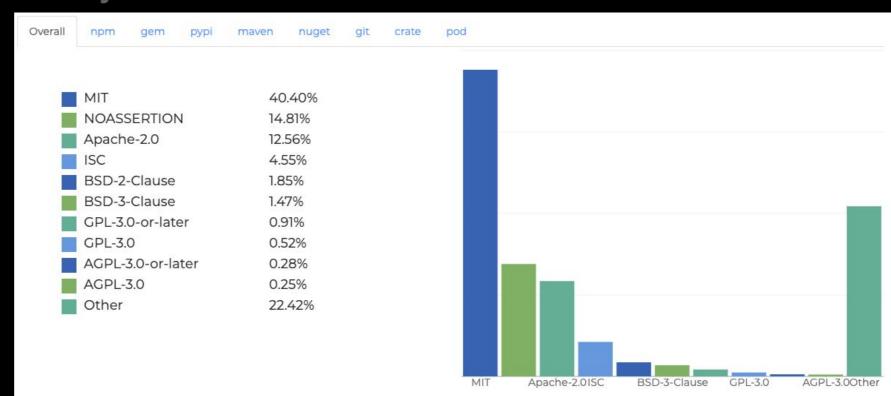
https://github.com/square/picasso

Open Source License 현황

Github - Big Query



Clearlydefined - Declared License Breakdown



https://bigquery.cloud.google.com/savedquery/921239845235:fe5160b5d98f493daf65cd67d5ea0253

https://clearlydefined.io/stats

OSS 대표 단체

Free Software Foundation

GNU 프로젝트 운영 및 Free SW 배포/관리



OSI (Open source Initiative)

OSS 라이선스 인증 관리

GPL Violations

GPL 라이선스 기반의 저작권 보호 및 소송지원 단체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

OSS 개발자를 위한 법적 자문기관

기타 : Linux Foundation, FOSS, OIN(Open Innovation Network), 국내 OSSF 등







OSS FAQ

Q. 공개SW는 아무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A. 네.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copyleft 라이선스인 GPL도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자는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보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듀얼 라이선스: 하나의 코드를 2가지 혹은 그 이상의라이선스로 배포하는 형태) 단, 제품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듀얼 라이선스는 원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이고, 공개SW 자체에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하는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유료로 판매한 GPL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용자가 다시 이를 수정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료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경우 공개SW의 저작권자는 공개SW 버전과 별도로 의무사항이 없는 상용버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SS FAQ

- Q. 공개SW를 단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일반 프로그램에 공개SW의 일부를 가져와 사용할 때 각각의 법적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 A. 각각의 법적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정없이 사용만 한 경우: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PL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공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2)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PL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공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MPL, EPL 등의 라이선스는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 공개SW 일부를 복사하여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경우: 비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copyleft계열의 라이선스인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OSS 에 관한 오해

- 오픈소스에서는 세상을 윤리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
- 수정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재공표 되어야 한다.
- 수정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커뮤니티에 반환해야 한다.
- 공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영구 공개된다.
-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거나 사유 소프트웨어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반대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이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정사항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정자는 자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오픈소스 정의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을 결정한다.

> 위 개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